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34

발의연월일: 2020. 9. 14.

발 의 자:전재수·최인호·박재호

이병훈·허 영·김정호

고영인 · 이장섭 · 김홍걸

김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제도는 1999년 동물병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폐지되었으나 동물병원의 암묵적 진료비 담합 과 동물병원별 과도한 진료비 편차 등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사람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호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접수창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음. 이 밖에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 학원, 목욕장, 숙박업소 등의 경우에도 요금표게시, 옥외가격표시제, 최종지불요금게시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가격 공시제도가 이미 시행중임.

반면, 동물의 보호자는 동물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 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나 공시 방법도 없는 등 불투명한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큰 상황임.

이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41조제2항제6호의3·제6호의4 신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3(진료비 고지 및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동물병원이 동물 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 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 다.
 -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반려동물의 진료에 따른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항목의 범위, 진료비 게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제2항제6호의3을 제6호의5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3 및 제6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
 - 6의4.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언 앵 <u><신 설></u>	제20조의3(진료비 고지 및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동물병 원이 동물 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를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반려동물의 진료에 따른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항목의 범위, 진료비게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의2. (생 략) < <u>신</u> 설>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한다.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u><신 설></u>

<u>6의3.</u> (생략)

7. ~ 9. (생략)

③ (생 략)

6의4.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

여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게

시하지 아니한 자

<u>6의5.</u> (현행 제6호의3과 같음)

7.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